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57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19. 9. .  
발 의 자: 장 길 천 의원

## 1. 제정이유

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종합계획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처우개선 사업과 신분 보장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19. 9. 20. ~ 9. 24.) 결과 : 접수의견 없음.
  - 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.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광진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기요양요원”이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장기요양기관”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을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)**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
2.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
3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실태조사)**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,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,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처우개선 사업 등)**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
2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, 연구 사업
3.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4.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
5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
6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)**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·조치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노동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)**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포상)**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할 경우 추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장기요양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.

1.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
2. 돌봄 서비스 질 향상
3.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
4. 지역 돌봄 발전
5. 그 밖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